

懸案分析 93-5

資金洗淨規制에 관한 立法例分析

1993. 8.

연구자 : 박 영 도(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I. 머리말	1
II. 資金洗淨에 관한 立法例分析	2
1. 美 國	3
2. 英 國	9
3. 프랑스	12
4. 獨 逸	14
5. 스위스	18
6. 日 本	20
7. 호 주	23
8. 캐나다	25
III. 結 語	26

資金洗淨規制에 관한 立法例分析

I. 머리말

최근 우리 나라의 신문지상에 「돈洗濯」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用語는 외국에서도 형사정책, 범죄학의 분야에서 Money Laundering, Geldwäscherei, blanchissage d'argent 등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多義的이나 不正한 거래에 의해서 얻은 「汚染된 金錢(Dirty Money)」을 은행등의 金融機關을 경유함으로써 「깨끗한 金錢」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법행위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한 資金을 금융기관의 口座로 부터 口座로 移轉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出處나 收益者를 은폐하고 이를 合法的 資金으로 위장하여 표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깨끗하게 된 金錢」은 다음의 거래에 이용되거나 또는 유리한 運用資金으로 활용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단적인 용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돈세탁」, 「資金洗淨」, 「金錢洗濯」, 「金錢洗淨」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資金洗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외국에서 「資金洗淨」이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배경으로는 주로 麻藥密賣組織이 불법적인 이익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거액의 수익을 안전하게 回收하고 그 세력을 확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現狀에 대처할 필요성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組織犯罪集團의 자금의 흐름을 법적으로 개입하고 그 위장, 전환, 이전을 포

착하여 資金源을 차단하고 세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 資金洗淨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 특히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1988년 12월 20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國際聯合의 『麻藥 및 向精神性物質의 부정거래 방지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이 체결되어, 계약국에 대해 약물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일정한 故意行爲를 범죄로서 내국형법으로 처벌할 국내법의 정비의무(제3조), ②광범위한 國際刑事司法協力, 즉 몰수·범죄인인도·협회의 사법공조·형사소추의 移送를 행할 의무(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²⁾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資金洗淨行爲를 범죄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立法的 措置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일부에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것을 대비 장기적으로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돈세탁방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³⁾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추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資金洗淨에 대한 규제입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主要國家의 資金洗淨에 관한 규제입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資金洗淨에 관한 立法例分析

- 1) 森下 忠, 「マネ-ロンダリング」, 判例時報 第1329號(1990.1.21.), 9面.
- 2) 자세한 것은 趙均錫, 「資金洗淨規制에 대한 國際的 動向」, 法曹 1992.4., 21~48面 參照.
- 3) 中央日報 1993년 8월13일자 「돈洗濯防止法 立法推進」記事 參照.

1. 美國

미국에서의 資金洗淨은 주로 藥物犯罪의 부정거래에 유래하는 금전의 형태와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의 資金洗淨罪는 1970년의 『銀行秘密法(Bank Security Act)』을 주축으로 하는 현금거래나 기타 금융거래에 관한 각종보고제도와 一體의 것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주된 것으로는 ①國內現金去來 報告制度(Currency Transaction Report :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거래에 관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內國稅入廳에 신고하는 제도), ②國際的現金移動 報告制度(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Report :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여행자수표 등을 합중국 국경을 넘어 반입·반출·우송 등을 하는 경우에 이들 자에 대해 關稅廳에 대해 신고를 요구하는 제도), ③外國金融口座 報告制度(Foreign Bank Account Report : 외국에 금융구좌를 가진 일정한 자에 대해 內國稅入廳에 신고하는 제도) 등이 있다.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구금형·벌금)이나 행정벌이 과해진다.⁴⁾

1983년에 설립된 조직범죄에 관한 大統領委員會는 이듬해 「Cash Connection」이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資金洗淨의 실태를 밝힘과 동시에 그 규제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⁵⁾ 그러한 가운데 1984년 이른바 Pizza Connection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각되는 등 藥物의 부정거래의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資金洗淨 處罰立法의 요구가 높아졌다.⁶⁾ 그리하여 1986년 10월 17일 資金洗淨罪를 신설하는 등의 내

4) 芝原邦彌,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マネ-ロンダリング罪」, 法律時報 1990.12., 208面.

5) 자세한 내용은 趙均錫, 「美國에서의 資金洗淨罪에 관하여」, 刑事學과 法學의 諸問題(凡集 閔建植檢事停年記念), 博英社 1991, 118~119面 參照.

용을 골자로하는 『資金洗淨規制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성립
 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1986년의 『藥物濫用規制法(Anti-Drug Abuse Ac
 t)』의 일부로서 규제약물의 밀수출입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외에 資金洗淨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⁷⁾

* 금융수단세정죄(Monetary Instruments Laundering Crime)

§1956 a. ①경제거래에 포함되는 재산이 위법행위에 유래하는 것임을 알
 면서 특정위법행위의 수행을 추진하는 의도등을 가지거나 198
 6년의 내국세입법 제7201조나 제7206조 위반행위에 관여할 의
 도를 가지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특정위법행위에 유래하는 수익의 성질, 장소, 원천, 소유관계
 지배관계를 은닉·위장할 목적 또는
2. 주법상·연방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도된 것임을 알면서 경제거래를 행하거나 그 기도를 한 자
 는 50만달러이하의 벌금, 당해거래에 사용된 재산가치의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과 자유형의
 병과에 처한다.

②특정위법행위의 수행을 추진하는 의도를 가지거나 당해 이송
 에 관련된 금융수단이나 자금이 어떠한 형태의 위법활동의 수
 익을 나타내고, 당해이송이 전부 또는 일부가

1. 특정위법행위에 유래하는 수익의 성질, 장소, 원천, 소유관계
 지배관계를 은닉·위장할 목적 또는
2. 주법상·연방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도된 것임을 알면서 금전 또는 재화를 합중국내로 부터 국
 외, 국외로 부터 합중국내로 수송·이동하거나 이를 기도한
 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제1항에 열거한 의도 또는 인식으로

6) 森下 忠, 「マネ-ロンダリングについての一考察」, JURIST 第949號,
 1990.2.1., 95面.

7) 18 U.S.C.A. §1956, §1957. 또한 동법에 관한 상세한 것은 R.Straffer,
 「Money Laundering : The Crime of the 90's」, 27 Amer.Crim.L.Rev.
 203(1989) ; J.Villa, 「Banking Crimes : Fraud, Money Laundering and
 Embezzlement」, 1990 등 參照.

1. 법집행관에 의해 특정위법행위에 유래하는 수익 또는
2. 특정위법행위를 행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산을 포함한 경제거래를 하거나 그것을 기도한 자는 벌금 또는 20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양자의 병과에 처한다.

§1956 b. 제1956조의 a항의 ①에 기재한 거래 및 ②에 기재한 수송을 행하거나 그 기도를 한 자는 1만달러이하 또는 거래에 사용된 재산, 금전 등의 가치가운데 다액이하의 민사금전벌에 처한다.

§1956 c. 이 조항에서

- ①「경제거래에 포함되는 재산이 위법행위에 유래하는 것임을 알면서」란 거래에 관련된 재산이 어떠한 범죄로 부터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 엄밀하게 알 필요는 없으며, 다만 주법·연방법상의 중죄에 속하는 어떠한 범죄의 수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②「수행」이란 거래를 개시 또는 종료하거나 거래의 개시 또는 종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③「거래」란 구매, 판매, 대부, 저당, 증여, 이전, 배달 기타 처분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관련된 예금·회수·구좌대체·현금교환·대부·신용연장·주식이나 채권의 매매·보증등 통상의 은행업무 일반을 포함한다.
- ④「경제거래」란 전신 기타 수단에 의하여 자금이동에 관련되거나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수단에 관련된 거래로서 어떠한 형태로 구간 또는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래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주간 또는 국제통상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활동이 당해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 ⑤「금융수단」이란 미국 또는 외국의 통화, 여행자수표, 개인수표 은행수표, 우편환 기타 소지인지불방식의 양도가능한 지불수단을 말한다.
- ⑥「금융기관」이란 제5312조 a의 2항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 ⑦「특정위법행위」란

1. 제1961조 1항에 열거된 범죄로서 은행비밀법 위반범죄는 제외
2.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내에서 발생한 경제거래와 관련한 규제약물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공급을 포함한 외국에 대한 범죄
3. 계속적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4. (생략) 약물범죄, 살인죄, 방화죄, 강도죄, 사기죄, 뇌물죄, 도박

죄, 유괴죄 등 연방 및 주법상의 주요한 중죄를 규정
 §1956 d. (생략)
 §1956 e. (생략)
 §1956 f. ① 그 행위가 미국시민에 의한 것이거나 미국시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미국내에서 발생하고,
 ② 거래나 일련의 관련거래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이나 금융
 수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역외 관할권이 있다.

이 조항은 국내경제거래에 의한 資金洗淨을 규제하는 「國內資金洗淨罪 (§1956 a ①)」, 자금의 국제적 이송에 의한 「國際資金移送罪 (§1956 a②)」 및 수사당국의 합정수사를 전제로한 범죄유형 (§1956 a③)으로 나누어 진다.

國內資金洗淨罪의 구성요건은 일정한 목적 또는 인식하에 「特定違法行爲 (Special Unlawful Activity)」의 수익과 관련한 경제거래(financial transaction)를 행하는 것이다. 마약거래에서 획득한 수익을 다시 麻藥去來를 행하기 위하여 마약구입자금으로서 送金하거나 그 出處를 은폐하기 위하여 은행의 假名口座에 입금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정위법행위의 收益(Proceeds)에는 범죄로 부터 직접 얻은 수익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파생된 수익등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거래란 金融機關을 매개로 한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經濟去來一般을 지칭한다. 또한 國內資金洗淨罪는 약물거래 기타 당해수익을 낚는 범죄의 본범이 행하는 경우도 본범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경우도 함께 처벌한다.⁸⁾

國際資金移送罪의 구성요건의 구조는 國內資金洗淨罪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본죄는 제1956조와 제1957조의 다른 범죄유형과는 달리 당해 자금은 위법행위의 수익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合法資金이더라도 그것을 특정위법행위 수행촉진의 목적으로 國外에 이송한다면 본죄가 성립

8) 芝原邦彌, 前掲論文, 209~210面.

한다.

수사당국에 일정한 陷穽搜查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1988년의 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것으로서, 이 조항에 의해 수사당국이 聯邦政府의 자금을 이용하여 資金洗淨을 행하여 검거하는 搜查가 가능하게 되었다.

* 금융거래죄(Monetary Transactions Crime)

§1957 a. 누구든지 d항의 어느 한 조건하에서 특정위법행위에 유래하고 그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범죄적 성질의 재산에 관한 금융거래에 정을 알고 종사한 자는 b항과 같이 처벌한다.

§1957 b. ① ②를 제외한 본조 위반의 처벌은 연방법전 제1편에 정한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②법원은 ①의 규정대신에 거래에 관련된 범죄로 부터 유래한 총재산의 2배이하의 대체벌금을 과할 수 있다.

§1957 c. 본조 위반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 정부는 특정위법행위로 부터 유래한 것인지 중죄로 부터 유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1957 d. 제 1957조의 a에서 규정한 조건이란

①본조위반의 범죄가 미국내 또는 미국의 특별해상 및 영토관할권내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②본조위반의 범죄가 미국의 외 또는 그러한 특별관할권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피고인이 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

§1957 e. 본조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지명한 법무부의 직원, 재무장관이 지명한 재무부의 직원 및 적당한 경우 체신부가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에 관해서는 체신부의 직원이 수사할 수 있으며, 체신부나 재무부 당국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체신부장관 및 법무장관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1957 f. 이 조항에서

①「금융거래」란 주간 또는 국제통상간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의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수단의 예치·인출·이전·교환을 말한다. 다만 그 정의에는 연방헌법 수정 제6조에 의해 보장된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범죄로 부터 유래하는 재산」이란 어떠한 범죄로 부터 얻은 수

익을 구성하고 있는 재산이나 그 수익으로 부터 생긴 여러 재산을 말한다.

③「특정위법행위」란 제1956조의 규정에 따른다.

本條는 어떠한 시점에서 金融機關을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규정은 「receive and deposit statute」라고 불리워 지며,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癡藥密賣人에게 토지를 매각한 자가 수취한 代金이 마약거래로 부터 얻은 자금인 것을 알면서 그 가운데 1만달러를 초과하는 額을 銀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行爲者가 그 자금이 범죄에 유래하는 것임을 알고 受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은행에 예금한 時點에서 범죄가 성립한다. 이 조항이 앞서의 제1956조와 다른 점은 同條가 제1956조처럼 犯罪遂行促進의 목적이나 자금의 출처의 隱蔽計劃의 인식 등, 특정목적이나 인식을 犯罪成立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은 刑事辯護를 맡은 辯護士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마약밀매인의 형사변호를 행하는 辯護士는 그 보수를 受取하는 때 그것이 마약거래에 유래하는 것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본조 위반이 되어 訴追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조 f. ①에서 金融去來의 정의규정에 단서조항이 삽입된 것이다.⁹⁾

그리고 동법은 은행의 金錢去來에 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을 5년이하의 拘禁刑 및 25만달러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이 업무로서 組織的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벌은 2배로 加重處罰한다. 보고의무에 위반한 거래의 대상인 金錢 뿐 아니라 그 금전에 의해 얻어진 다른 자산도 沒收된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 금전거래에 관하여 대단히 엄격한 報告義務를 요구하고 있다.

9) 早川武夫, 「癡藥資金の沒收と辯護料」, 法學セミナー- 第427號, 10面.

이상과 같이 미국의 資金洗淨處罰規定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하다. 그 대상이 되는 資金은 약물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지 않고 「特定違法行爲」에 해당하는 연방법상 및 주법상의 주요한 범죄에 의한 수익이 전부 포함된다. 또한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經濟去來」나 「金融去來」이므로 시민의 경제활동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다. 그리고 조문이 복잡하고 難解하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容易하다. 10

2. 英國

영국에서의 資金洗淨에 관한 법률은 藥物去來와 테러行爲에 유래하는 수익에 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資金洗淨은 범죄자가 은닉, 이전 또는 전환에 의해 불법적인 수익에 대한 抑制를 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1986년의 『藥物去來犯罪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에 규정된 資金洗淨規定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24①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자가 타인(이하 A라 한다)이 마약거래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또는 마약거래로부터 이득을 얻은 자임을 알거나 그러한 혐의를 두고 있으면서도 다음 각

- 10) 美國의 資金洗淨罪의 구조는 이른바 RICO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의 構造와 매우 유사하다. 상세한 것은 芝原邦彌, 前掲論文, 213面 및 趙均錫, 前掲論文(美國에서의 資金洗淨罪에 관하여), 143面 以下 參照.
- 11) Halsbury's Statutes Vol.12(Criminal Law), p.1013~1015. 또한 동법에 관한 상세한 것은 A.Samuels,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1986」, 130 Solicitors' Journal 686(1986); E.Hiley,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1986」, 84 Law Society's Gazette 3557(1987) 등 參照.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과 다른 방법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된다.

(a) A의 마약거래수입의 A자신에 의한 또는 그를 대리한 보유·관리(은폐, 관할구역외로의 이동, 지정된 자에로의 이전)를 용이하게 한 경우

(b) A의 마약거래수입이 A의 처분에 맡겨진 기금이 되도록 사용되거나, A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투자에 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② 본조에 열거한 어떠한 자의 마약거래수익이라 함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인의 마약거래수익으로 부터 발생함을 나타내는 재산을 포함한다.

③ 어떠한 자가 어떠한 기금 또는 투자가 마약거래로 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혐의 또는 확신을 경찰에 제보하거나 그러한 혐의 또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실을 알린 경우,

(a) 그러한 제보는 계약상의 정보제공제한의 위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 당해인이 본조 제1항에 위반하여 행동하고 그러한 제보가 문제의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제보가 이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해진 때, 즉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조에 열거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당해인이 경찰의 동의하에 행하여진 문제의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2. 당해인이 문제의 행위를 수행한 후 제보하였으나 그러한 제보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또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조속히 행하여진 경우

④ 본조에 열거한 범죄행위로 인한 어떠한 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된다.

(a) 당해인이 그러한 계약이 타인의 마약거래수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혐의를 두지 아니한 경우

(b) 당해인이 그러한 계약에 의하여 A에 의한 또는 A를 대리한 재산의 보유 또는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어떠한 재산이 제1항에 열거한 바와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혐의를 두지 아니한 경우

(c) 당해인이 약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혐의, 확신 또는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고자 하였으나 제3항(b)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본조에 열거한 범죄행위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벌한다.

(a)정식기소되어 14년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b)약식기소되어 6월이하의 구금형 또는 법정최고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資金洗淨行爲의 기준범죄는 약물거래행위에 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38조1항 소정의 規制藥物의 생산, 공급, 수송, 보유 또는 수출입 등을 지칭한다. 따라서 資金洗淨行爲의 대상은 약물거래로부터 취득한 수익이며, 그 실행지가 비록 國外이더라도 대상이 된다. 또한 동법 제27조에서는 巡廻判事(Circuit judge)는 경찰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藥物去來犯罪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警察에게 제출하거나 그 열람에 응하도록 金融機關을 포함하여 그 所持者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8조에서는 判事에게 수색영장을 발부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1조에서는 동법 제27조에 의한 提出命令이 발해지거나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警察의 청구가 있으나 아직 그 청구가 각하되지 아니한 경우나, 동법 제28조에 의한 수색영장이 발해진 경우에 수사당국이 情報를 구하고 있고 수사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의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暴露하는 行爲를 처벌하고 있다.」

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金融機關은 사실상 고객이 약물거래에 관여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음을 認識하거나 그 의심을 가진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報告할 義務를 지게 된다. 이 보고를 행한 경우에는 제24조1항

12) 芝原邦彌, 「麻藥資金の沒收と資金淨化の處罰」, 法律時報 1990.11., 74면.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범죄로 되지 않음과 함께 고객 등과의 관계에서 守秘義務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민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것도 免除된다. 그러나 일상의 금융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去來를 수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것인가의 基準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 판단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藥物去來에 의한 부정이익의 박탈에 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익의 박탈절차는 王室法源(Crown Court)에 의해 유죄인정 후 형의 言渡前에 행해지며, 법원은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몰수액을 결정하여 沒收命令을 발한다(제1조). 또한 몰수대상재산의 보전조치로서는 拘束命令(restraint order)과 賦課命令(charging order)이 있다(제7조 참조).¹³⁾

한편 영국에서는 테러행위와 관련한 資金洗淨을 규제하는 1989년의 『테러리즘防止(잠정규정)法(Prevention of Terrorism Act)』이 있으며, 동법 제 11조에서 테러리즘자금의 保管 또는 管理援助罪(assisting in retention or control of terrorist funds)를 규정하고 있다.¹⁴⁾ 그리고 1990년의 『刑事司法(국제공조)法(Criminal Justice(International Cooperation)Act)』도 資金洗淨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25조, 제26조 참조).¹⁵⁾

3. 프랑스

13) 자세한 내용은 趙均錫, 「諸外國에 있어서 資金洗淨規制(1) -英國-, 法曹, 1992.8., 40面以下 參照.

14) 이 法律의 全文은 法制處, 「1989年테러리즘防止(暫定規定)法」, 最近外國立法動向 第93號, 1990.1., 25~43面 參照.

15) 자세한 내용은 法制處, 「1990年刑事司法(國際協力)法」, 最近外國立法動向 第98號, 1990.11., 40~58面 參照.

프랑스에서의 資金洗淨規制는 약물범죄수익과 관련되는 洗淨行爲에 대해서만 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법규로서는 『公衆衛生法(code de la sante publique)』과 『關稅法(code de douanes)』에 규정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법>

§627①정령에 의하여 약물로 지정된 물질 또는 식물에 관하여 전조(생산, 운반, 수입, 수출, 소지, 교부, 양도, 양수, 사용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구금형 및 5000프랑이상 50만프랑이하의 벌금 또는 그 중 하나의 형에 처한다. 상기 물질 또는 식물의 위법한 수입, 생산, 제조, 수출에 대해서는 구금형을 10년이상 20년이하로 한다.

②(미수범 및 결사 또는 단체에 관한 처벌규정)

③모든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여 본조 제1항의 죄중에 하나를 범한 행위자의 자금 또는 재산의 출처를 허위로 정당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기도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이러한 죄의 수익의 투자, 위장 또는 전환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가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구금형 및 5000프랑이상 50만프랑이하의 벌금 또는 그 중 하나의 형에 처한다.

④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행위가 외국에서 행해진 경우에도 제3항의 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資金洗淨罪의 전제범죄는 약물범죄에 한정되며, 그 客體는 약물범죄의 수익(produits)이다. 收益에는 유형적 재산 및 무형적 이익을 포함하며, 犯罪行爲로 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래한 수익도 포함된다.¹⁶⁾ 그리고 資金洗淨行爲는 어느 경우에도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추측에서는 행위자가 당해 자금의 출처가 違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資金洗淨行爲罪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형의 시효는 20년이다.¹⁷⁾

16) 森下 忠, 「フランスのマネ-ロンダリング立法」, 判例タイムス 第717號, 19面.

그리고 동법 제629조에서는 약물범죄수익에 대한 沒收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犯行에 사용된 설비, 재료 및 모든 재산과 위 범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래하는 수익을 압수,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9조 3항 참조). 또한 동법 제627조의 4에서는 몰수대상재산의 보전을 위한 凍結措置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415 약물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식물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래한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 국내·외로의 송금, 양도 또는 어음교환을 통하여 프랑스와 외국간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이를 기도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구금형, 범죄조성물의 몰수 또는 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액에 대한 몰수 및 위반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에 규정된 資金洗淨行爲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1988년 12월 23일에 새로이 규정되었다. 즉, 동조는 藥物去來의 수익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國內에서의 형사소추에 의한 몰수를 회피하거나, 새로운 약물거래를 위하여 外國에서 國內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반복함으로써 資金洗淨過程을 복잡하게 만들어 수사기관으로 부터의 追跡을 피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또한 동법 제386조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의 몰수대상재산의 保全措置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¹⁷⁾

4. 獨逸

17) 芝原邦彌, 「麻藥新條約と金融活動作業グループ勸告への對應 -フランスの場合」, 法律時報 1990.9., 94面.

18) 趙均錫, 「諸外國에 있어서 資金洗淨規制(4)」, 法曹 1993.4., 71~75面.

독일에서의 資金洗淨規制는 특히 거대화하는 국제마약조직에 대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의하여 대두되었다. 독일에서의 資金洗淨罪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야당인 社會民主黨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조직범죄를 일소할 것을 목적으로 그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制裁의 초안을 1989년 및 1990년의 2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그 후 刑法과 刑事訴訟法을 포함한 광범한 개정을 실현하는 여론조성을 위한 국민운동을 조직하는 한편 司法府內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¹⁹⁾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組織犯罪對策法의 입안작업을 진행, 연방의회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거쳐²⁰⁾ 마침내 1992년 7월 15일에 공포되어 동년 9월 15일에 시행된 『不法적인 麻藥去來 기타 組織犯罪의 現狀形態防止對策法(Gesetz zur Be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r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을 마련하였다.²¹⁾ 이 법률은 형법·마약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의 一部改正을 실현한 법률이며, 내용적으로 매우 다기하다. 이에 의거 資金洗淨에 대한 規制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었다.

§261①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범죄로 부터 발생한 물건을 은닉하거나 그 유래를 은폐하거나 그 유래의 수사, 물건의 발견, 수탈, 몰수 또는 확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위협에 처하게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 19) 자세한 立法經緯는 宮澤浩一, 「ドイツにおける資金の洗淨をめぐる新立法について」, 時の法令 第1446號・第1448號・第1452號 參照.
- 20) 자세한 것은 宮澤浩一, 「組織暴力規制の立法例(3)」, 時の法令 第1410號, 48~59面.
- 21) BGBl. I S. 1302.

1. 타인의 중죄
2. 마약법 제29조1항 제1호에 의한 타인의 경죄 또는
3. 범죄적 단체(제129조)의 구성원에 의해 범행된 경죄
 - ② 제1항에 열거한 물건에 관해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범행한 자도 같다.
 1.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조달
 2. 보관 또는 그 물건을 획득한 시점에서 그 유래를 알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
 - ③ 본조의 미수는 처벌한다.
 - ④ 특히 중한 경우에는 형은 6월이상 10년이하의 자유형으로 한다. 범인이 직업적 또는 자금의 세정을 계속적으로 범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물건이 제1항에 열거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부터 발생한 것을 경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자는 2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 ⑥ 제3자가 그 이전에 그것에 의해 범죄행위를 범하지 않고 그 물건을 취득한 때는 그 행위는 제2항에 의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 ⑦ 범죄행위가 관계하는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a를 적용한다. 범인이 자금의 세정을 계속적으로 범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는 제43조a(새로운 자산형)과 제73조d(확대수탈)를 적용한다. 제73조d는 범인이 직업적으로 행위한 때에도 적용한다.
 - ⑧ 행위에 관한 행위지에서도 형이 정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외에서 범해진 행위로 부터 발생한 물건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열거한 물건과 동일하다.
 - ⑨(자수에 관한 규정)
 - ⑩(법원에 의한 형의 경감·면제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다음에 검토하는 스위스刑法 제305조의 2와 거의 다를 바 없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제261조의 5항에서 「輕率하게 認識하지 않았던(leichtfertig nicht erkennt)」 과실행위가 처벌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1항의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범죄로 부터 發生한 物件」에서의 「發生(herrühren)」이라는 용어는 물건의 가치를 保持하면서 본래의 물건

을 다른 물건으로 변화시키는 一連의 利用行爲를 포함한다. 그런데 동조의 내용은 매우 막연하고 애매한 表現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마약범죄를 필두로 하는 不法行爲에 의해서 막대한 資金을 획득하여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組織犯罪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不明確한 文言을 가진 규정을 구사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²²⁾ 따라서 문제는 今後 판례·학설이 이들 구성요건에 관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동조 제7항과 관련하여 동법 43조의 a에서는 「①본법에서 본규정의 적용을 지시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유형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자유형과 아울러 범인의 재산적 가치에 의해 그 상한을 정한 금액의 지불을 언도할 수 있다. 收奪(Verfall)이 명해진 재산적 가치는 재산의 평가에 즈음하여 사정으로부터 제외한다. 재산의 가치는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지불불능의 경우에 재산형에 대체하는 자유형을 정한다. 대체자유형의 상한은 2년, 하한은 1월로 한다.」라고 하여 새로운 財産刑(Vermögensstrafe)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등의 實務界에서는 거액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應策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학자는 憲法的으로도 法政策的으로도 의문이 있는 조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하튼 마약범죄와 그를 실행하는 조직범죄, 특히 國際的인 麻藥組織의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압력하에서 마약조직에 의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不法的인 利得을 박탈시켜 마약범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여 범죄를 저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政策論이 우선하여 본 규정이 도입되었다.

22) 宮澤浩一, 「ドイツにおける資金の洗淨をめぐる新立法について(2)」, 時の法令 第1448號, 43面.

5.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麻藥과 관련한 자금이 스위스은행의 철저한 守秘義務를 역이용하여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自主規制가 행해졌다. 1977년 7월에 스위스은행과 스위스은행가협회 사이에 「資金引受時의 주의의무 및 은행비밀의 開示에 관한 협정(Convention relative à l'obligation de diligence lors de l'acceptation de fonds et à l'usage du secret bancaire)」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은행거래에 즈음하여 顧客의 신원확인 의무를 담은 협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사건에 있어서 은행이 고객으로 부터 身分證明書의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다. 그 결과 1987년 10월에 동 협정이 개정되어, 「은행의 注意義務에 관한 協定」으로 개칭되어, 10만프랑을 초과하는 예금, 송금을 하는 경우에 고객과 경제적 권리자의 신원을 일정한 文書로 확인하는 의무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스위스政府는 사태의 추이를 증시하여 형법개정작업에 이를 도입하려 하였다. 그 후 1985년, 1986년에 행해진 財産犯의 개정에 관한 법안의 심사절차에서 마약거래와 관련한 資金洗淨의 문제를 麻藥法을 개정하여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刑法典에 資金洗淨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가의 의견이 제출되었다.²³⁾ 그리하여 1989년 6월11일 정부는 형법일부개정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제출, 議

23) 자세한 立法經緯는 Paolo Bernasconi, 「Finanzunterwelt. Gegen Wirtschaftskriminalität und organisiertes Verbrechen」, 1988, S.48ff ; Beat Messerli, 「Die Geldwäscherei de lege lata et ferenda. Bemerkungen zu einem von Paolo Bernasconi erarbeiteten und durch das EJPD in die Vernehmlassung geschickten Gesetzesentwurf」, SchwZStr. Bd.105, 1988, S.418ff ; Gunther Arzt, 「Das schweizerische Geldwäschereiverbot im Lichte amerikanischer Erfahrungen」, SchwZStr. Bd.106, 1989, S.160ff ; 宮澤浩一, 「スイスにおける經濟犯罪規制の新展開」, 法學政治學論究 第5號, 1990, 14~24面 參照.

會의 의결을 거쳐 1990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305의 2 ① 중죄로 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다고 추측되는 재산가치의 원천의 판정, 발견 또는 몰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경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②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은 5년이하의 중징역 또는 경징역으로 한다. 자유형에 100만프랑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행위자가 특히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인정된다.
- a. 조직범죄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는 것
 - b. 조직적으로 자금세정을 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의 행동원으로서 행동하는 것
 - c. 업으로서 자금세정을 행함으로써 대규모적인 거래를 하거나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 ③ 주된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범해진 경우에 그 행위가 범죄지 국가에서도 가벌적인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한다.
- §305의 3. 업으로서 타인의 재산가치를 수취, 보관, 투자 또는 이전을 하는 자가 정황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경제적 권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그르친 경우에는 1년이하의 경징역,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財産價值(Vermögenswerte, valeurs patrimoniales)」란 금전,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보석 기타 모든 동산 등을 포함하며, 「重罪(Verbrechen)」란 중징역에 과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推測되는 경우」란 과실범의 처벌을 의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에게 舉證責任을 전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未必的 故意의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다. 加重私有가 인정되는 제2항의 a의 경우는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동항 b의 경우는 조직적으로 資金洗淨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2인이상으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 즉 資金洗淨으로서 행동하는 것과 관련하는 것이다.

제305조의 3에서 규정하는 「業으로서……하는 者」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외에도 신탁업자, 재산관리인, 자금상담원, 귀금속상, 환전상 등을 말한다. 이 조항은 그 財産價値의 出處에 관하여 행해질 수 있는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이 있음으로써 제305조의 2에 규정된 범죄의 搜查가 가능하게 된다.²⁴⁾

6. 日本

일본에 있어서의 資金洗淨에 대한 규제는 조직폭력단에 대한 資金洗淨과 마약범죄와 관련한 資金洗淨의 두가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조직폭력단에 의한 資金洗淨規制는 1991년 5월 15일에 제정된 『暴力團에 의한 不當行爲防止 등에 관한 法律』에서 이를 규제하려 하였으나, 법안의 심의단계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한편 麻藥犯罪와 관련한 資金洗淨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마약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資金洗淨規制策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88년 12월 10일에 체결된 UN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부정거래방지조약」의 서명·비준과 관련하여 日本政府에서도 1991년 10월 2일 『國際的 協力下에 規制物質에 관련된 不正行爲를 助長하는 行爲 등의 防止를 도모하기 위한 麻藥 및 向精神性藥團束 등의 特例 등에 관한 法律』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²⁵⁾ 동 법의 규정중 資金洗淨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趙均錫, 「諸外國에 있어서의 資金洗淨規制(3) -스위스-」, 法曹 1992.12., 38面.

25) 자세한 立法經緯는 尊見英樹, 「麻藥二法立法の背景と概要」, 法律のひろば 1992.5., 8~16面 및 趙均錫, 「日本에 있어서 資金洗淨規制」, 法曹 1991.12., 26面以下 參照.

- §9(불법수익등 은닉죄) 불법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거나 불법수익등을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불법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수죄, 예비죄도 처벌한다.
- §10(불법수익등 수수죄) 정을 알고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 있어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시에 당해 계약에 관련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의 정을 알지 못하고 한 당해계약에 관련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한다.
- §11①약물범죄(규제약물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하는 것에 한한다)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규제약물로서 교부를 받거나 취득한 약물 기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약물범죄(규제약물의 양도, 양수 또는 소지와 관한하는 것에 한한다)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약물 기타 물품을 규제약물로서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규제약물로서 교부를 받거나 취득한 약물 기타 물품을 소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서 「不法收益等」이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 유래하는 재산 또는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이외의 재산이 混在된 財産을 말한다. 또한 「불법수익」이란 藥物犯罪의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 또는 당해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또는 藥物4法(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대마단속법·각성제단속법·아편법)에 규정하는 資金等 提供罪에 관련한 자금을 말하며, 「不法收益에 유래하는 財産」이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거하여 획득한 재산을 말한다.²⁶⁾

여기에서 재산이란 경제적 이익일반을 말하며, 따라서 동산·부동산 등의

26) 本田守弘, 「麻薬新法におけるマネ-ロンダリング等の處罰」, 法律のひろば 1992.5., 17面 以下.

有體物에 한하지 않고 예금·저금 등의 금전채권 또는 특허권 등의 無體財產權 등도 포함된다. 동법 제9조에서 처분에 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서는 가공명의, 제3자명의에 의한 財產(채권, 주권, 상품 등)의 구입행위 등이 있으며, 隱匿行爲로서는 불법수익의 물리적 은닉외에 매우 銀行秘密이 철저한 은행으로의 예금 등이 있을 수 있다.

동법 제9조의 不法收益等 隱匿罪가 그 행위자체가 직접 약물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인데 대해 동법 제10조의 不法收益等 收受罪는 그러한 행위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약물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다. 제10조의 「收受」란 유상, 무상을 불문하며, 불법수익등을 취득하거나 그 인도를 받아 이를 지배할 수 있는 地位 내지 立場에 있는 것을 말한다. 「情을 알고」란 수수에 관련된 재산이 불법수익 등인 것을 알고, 즉 不法收益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당해재산이 불법수익 등임을 알면서 이를 收受한다면 본조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確定的 故意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未必的 故意도 포함한다. 「채권자에 있어서 상당한 財產上의 利益을 제공하는 계약」의 「債權者」란 불법수익등을 수수하는 자이며, 「相當한」재산상의 이익이란 불법수익과 대가관계에 의거한 재산상의 이익외에 대가관계에는 의거하지 않은 것, 사회통념상 수수하는 불법수익 등이라고 대체로 同等의 價値를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동 법은 이와 같은 불법수익 등에 대해서 沒收 및 起訴前 물수보전절차를 두고 있으며(제14조, 제18조, 제20조 참조) 물수되어야 할 재산을 물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하며(제17조), 추징에 대해서도 保全節次를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51조). 그리고 동법은 沒收 및 追徵裁判의 집행 및 보전에 관한 國際公助節次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제70조 참조).²⁷⁾

한편 金融機關 등에게는 업무상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 등이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藥物犯罪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사항을 主務長官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7. 호 주

호주에 있어서 資金洗淨規制는 1987년 법률 제87호로 제정된 『犯罪收益規制法(Proceeds of Crime Act)』 제5부 제1장(Part V-Offences, Division 1-Laundering)의 제81조와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81①본조에 있어서는 거래(Transaction)에는 증여나 수증을 포함한다.
②본법시행후에 資金洗淨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a)범죄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20만달러이하의 벌금 또는 20년이하의 구금형 또는 양자의 병과
(b)범죄자가 단체(body corporate)인 경우에는 60만달러이하의 벌금
③어떤 자가
(a)범죄의 수익인 금전 기타 재산을 포함한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경우 또는
(b)범죄의 수익인 금전 기타 재산을 수취, 소지, 은닉, 처분 또는 호주에 반입하는 경우에
그 금전 기타 재산이 어떠한 형태의 위법활동으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래하거나 취득한 것을 알고 있는 때 또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자는 資金洗淨에 관여하는 자이다.
§82①본법시행후 범죄로 부터의 수익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금전 기타 재산을 수취, 소지, 은닉, 처분 또는 호주에 반입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a)범죄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5천달러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구금

27) 野野上尙, 「麻藥新法における没収・追徴制度の概要」, 法律のひろば 1992.5., 30面.

형 또는 그 양자의 병과

(b)범죄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1만5천달러이하의 벌금

②어떤 자가 본조의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경우 소추에 관계된 재산이 어떤 형태의 위법한 활동으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래 또는 취득하였다고 의심이 있는 때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범죄로 부터의 收益(proceeds of crime)」이란 ①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se) 또는 ②麻藥에 관한 국외범이며, 호주에서 범해졌다면 正式起訴犯罪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래하거나 취득한 모든 財産(property)을 말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하며 또한 國內에 있는가를 불문하며 이들 재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 警察은 특정인의 구좌를 통하여 행해진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金融機關에 대해 명할 수 있으며, 또한 金融去來에 관한 원본을 7년간 保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범죄수익을 特定하는 등을 위하여 保存을 의무화 한 것이다.²⁸⁾

한편 1988년의 『金融去來報告法(Cash Transaction Reports Act)』에 의하면 금융거래업자는 구좌를 개설하는 자 또는 대금업, 보관함과 같은 편의제공의 개시를 신청하는 자의 身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은 금융거래업자는 특히 免除되지 않는 한 國內에 있는 顧客이 1만달러이상의 금액을 金融去來한 경우에는 그 상세를 金融去來報告局(Cash Transaction Reports Agency)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거래업자는 탈세, 법률위반 또는 범죄활동에 유래하는 金錢을 포함한 거래(현금거래인가의 여부를 불문)라고

28) 森下 忠, 「諸外國のマネ-ロンダリング立法」, 判例タイムス 1990.5.1., 51面.

의심하기에 충분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

8. 캐나다

캐나다에 있어서 資金洗淨의 규제는 刑法 제462·31조의 犯罪收益洗淨罪 (Laundering of Proceeds of Crime)이며, 동조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62·31①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산 또는 그 수익을 은닉, 전환할 목적으로 또한 그 재산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a) 특정중죄 또는 특정약물범죄의 캐나다에서의 수행 또는

(b) 그 행위가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특정중죄 또는 특정약물범죄를 구성하리라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알면서 그 재산 또는 수익을 사용, 이송, 타인 또는 타장소로 이전, 수송, 전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한 자는 본조의 죄를 범한 자이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a) 정식기소범죄에서 유죄로 되며, 10년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거나

(b) 약식재판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규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特定重罪(enterprise crime offenses)」와 「特定藥物犯罪(designated drug offenses)」라는 개념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는 중수죄, 정부에 대한 사기, 풍속파괴, 도박장영업, 도박, 매춘업경영, 모살, 절도, 강도, 공갈, 문서위조, 위조문서의 행사, 사기, 방화, 통화위조, 위조통화의 행사, 범죄수익의 資金洗淨, 범죄로부터 취득한 재

29) 趙均錫, 「諸外國에 있어서 資金洗淨規制(2) -호주·캐나다·홍콩-」, 法曹 1992.9., 59면.

산의 所持, 특정범죄에 관한 共謀·企圖, 事後從犯 등이 포함된다. 후자에 관한 것으로는 癮藥新條約 제3조1항a호에 열거된 행위(약물제조, 판매, 수송, 밀수 등)를 의미한다. 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수익을 은닉·전환할 목적이 있을 것 및 財産·收益이 범죄로 부터 획득된 것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한편 『癮藥團束法(Narcotics Control Act)』에서도 일정한 마약범죄에 대한 資金洗淨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食品·藥品法(Food and Drugs Act)』에서도 일정한 금지약물에 대한 犯罪收益洗淨罪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성요건은 형법상의 범죄수익소지죄와 범죄수익세정죄와 유사하다.³⁰⁾

그리고 法務長官은 특정약물범죄나 그 범죄로 부터 취득 또는 유래된 재산과 관련한 犯罪收益所持罪와 犯罪收益洗淨罪에 관하여 수사할 목적으로 情報開示命令(order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위 特定藥物犯罪나 그와 관련된 범죄수익소지죄나 범죄수익세정죄를 범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情報나 資料가 범죄수사에 있어서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및 그 情報나 資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公共의 利益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발한다(형법 제 462·48조 참조).

Ⅲ. 結 語

30) 자세한 내용은 趙均錫, 「諸外國에 있어서의 資金洗淨規制(2)」, 法曹 1992.9., 62面以下 參照.

이상과 같이 주요국가의 資金洗淨規制에 대한 立法例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UN의 麻藥新條約의 서명·비준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관련국내법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資金洗淨規制에 관한 본격적인 작업에 관해서는 별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立法을 위해서는 資金洗淨規制에 수반한 각종 쟁점, 즉 資金洗淨罪를 형법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保護法益, 구성요건방식, 過失犯의 처벌, 國外犯의 처벌, 새로운 沒收制度의 도입, 金融機關에 대한 관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작업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외국에서의 資金洗淨行爲의 前提犯罪는 주로 약물범죄에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약물범죄이외에 組織犯罪를 비롯한 일정한 중대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前提犯罪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立法方向에도 일정한 중대범죄까지 前提犯罪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資金洗淨行爲가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등을 적절히 규제함과 아울러 資金洗淨行爲를 방지하기 위한 金融機關의 역할제고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나아가서는 資金洗淨行爲의 국제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國際刑事司法共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³¹⁾

31) 상세한 것은 趙均錫, 「犯罪收益剝奪을 위한 立法論 -資金洗淨規制를 중심으로-」, 刑事政策研究 제3권3호, 1992 가을號, 115~170面 參照.

懸案分析 93-5 資金洗淨規制에 관한 立法例分析

1993년 8월 27일 印刷

1993년 8월 3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값 1,200원

